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8.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7일, 조지연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2. 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5. 7. 1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7. 2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대체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조지연)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공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류 등 야생동물 위험관리를 포함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할 수 있는 조류 충돌사고(Bird Strike)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것은 공항의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조류충돌로 인한 사고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관련 장비 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임종수)

VI. 검토의견

3. 조류충돌 방지 전문인력 운영 등(김예지의원안 제56조의4 및 제69조제1항제7호, 조지연의원안 제56조의4)

가. 개정안의 내용

김예지의원안은 공항운영자에게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조지연의원안은 공항운영자에게 조류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장비 운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현 행	김예지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신 설>	제56조의4(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의 운영 등)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운영하여야 하며,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 환경 등을 반영한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운영의 기준 및	제56조의4(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장비 운용)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명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수는 공항 운

현행	김예지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u><신설></u> ② ~ ⑥ (생략)	<u>계획 수립의 시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제69조(과태료)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제5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인력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u> ②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영시간, 운영하는 활주로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u> 제69조(과태료)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 조류충돌 위험

1) 「공항시설법」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시설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시설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관리 계획의 수립 근거를 상향입법하고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장비 운용 근거를 마련하여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4호, 2022. 11. 8., 일부개정.]

제8조(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① 각 공항의 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 ① 공항운영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항 운영시간, 운영하는 활주로 수에 따라 적정한 조류 충돌예방 전담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되, 그 인원의 수는 최소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 이·착륙이 불가능한 복수활주로 및 교차활주로는 매 두개의 활주로 중 하나를 0.5개로 보아 적용한다.

적용 활주로 수	운영시간	9시간이하	9시간 초과 18시간 이하	18시간 초과
1개		4명	8명	12명
1.5개		6명	12명	18명
2개		8명	16명	24명
2.5개		10명	20명	30명
3개		12명	24명	36명
3.5개		14명	28명	42명
4개		16명	32명	48명

제30조(조명탄의 사용) 조류 충돌예방용 조명탄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10. 19.>

공항시설·비행장시설 관리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0. 공항 및 공항 주변에서의 항공기 운항 시 조류충돌을 예방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에서 정한 조류충돌 예방계획(오물처리장 등 새들을 모이게 하는 시설 또는 환경을 만들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인원·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이 경우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31조(총기류의 관리) 조류 충돌예방용 총기류는 규칙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총기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습기와 녹이 슬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총기류의 안전관리) 조류 충돌예방용 총기류의 안전취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제33조(폭음기의 안전관리) 조류 충돌예방용 폭음기의 안전취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지난 2월 6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조류 충돌 위험관리 인력의 운용이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음.

현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법적 근거인 「공항시설법」 제31조²⁾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비한데, 김예지의원안은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수립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조지원의원안은 별도 제재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2) 「공항시설법」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시설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시설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10. 19.>

공항시설·비행장시설 관리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0. 공항 및 공항 주변에서의 항공기 운항 시 조류충돌을 예방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에서 정한 조류충돌 예방계획(오물처리장 등 새들을 모이게 하는 시설 또는 환경을 만들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인원·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이 경우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김예지의원안에 따라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동의함. 다만, 조류충돌 예방활동(전문인력 운영 등)은 「공항시설법」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안을 「공항시설법」 제31조의5로 신설하고, 같은 법 내 일관성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공항시설법」 제56조³⁾와 동일하게 ‘조류충돌사고 방지’를 ‘조류충돌 예방’으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